

문서번호	지역경제과-17 070
결재일자	2016.4.7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보도여부	

주무관	유통지도팀장	지역경제과장	기획재정국장	부구청장
이학순	고혜숙	정길용	이상형	04/07 하철승
협 조	자치행정팀장	김준영		
	정보화지원팀장	최재훈		
	행정지원팀장	노용한	홍보마케팅팀장	노갑섭



2016년 계량기(저울) 정기검사 실시 계획

2016. 4. 7.

강 북 구
(지역경제과)

2016년 계량기(저울) 정기검사 실시 계획

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(저울)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정확도 유지 및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, 불법·불량 계량기를 일소하여 국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고자 함

I 추진근거

■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(정기검사)

-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시·도지사가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
※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에 의거 구청장에게 사무위임
- ② 정기검사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
- ③ 정기검사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함
- ④ 시·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면제

II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

■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

2014년 정기검사 기준

검사대상 계량기	수 량(개)
합 계	1,232
• 판수동(板手動) 저울	6
• 접시지시 및 판지시(板指示) 저울	486
• 전기식지시 저울	740

※ 정기검사 면제 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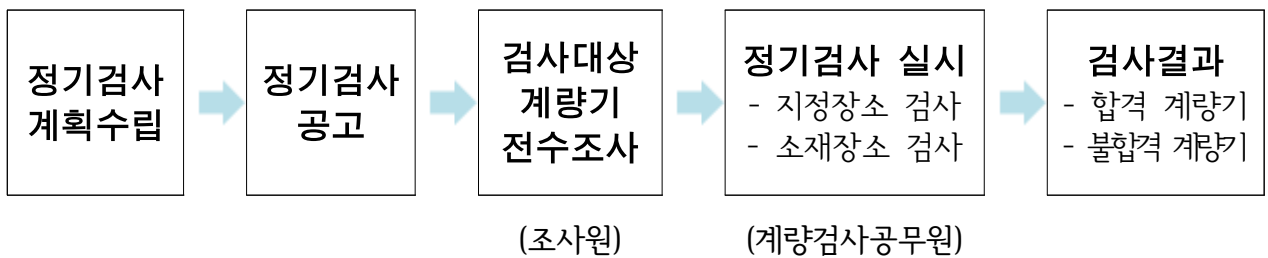
- 2015년 또는 2016년 검정을 받은 저울
-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
-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
-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
-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(체중계, 가정용·교육용·참조용 표시 저울 등)

Ⅲ 추진 개요

■ 추진기간: 2016. 4. 7. ~ 7. 20.

■ 검사주체: 강북구청장

■ 검사방법



■ 총사업비: 6,466천원(구비)

■ 일정별 추진사항

- 2016. 4. 7일 : 2016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계획 수립
- 2016. 4. 15일 : 계량기 정기검사 공고 및 검사 준비
- 2016. 4. 18. ~ 5. 4. : 계량기조사원 및 검사보조원 모집
- 2016. 4. 20. ~ 4. 22. : 계량검사 담당 공무원 교육이수(집합교육)
- 2016. 5. 9. ~ 5. 24. : 검사대상 전수조사
- 2016. 5. 30. ~ 6. 21. : 정기검사 실시(동별 순회 검사)
- 2016. 6. 22. ~ 6. 30. : 소재지 출장, 미수검사 추가검사 실시
- 2016. 7. 20일 한 : 정기검사 결과 보고(서울시)

IV

세부 추진 계획

분야별	추진 내용	비고
정기검사 준비	가. 기 간: 2016. 4. 15일 나. 기준분동 교정(전문기관 의뢰) 다. 합격라벨, 각종 서식 및 홍보 인쇄물 제작 - 통지서, 합격필증, 사용중지 표시증, 검사대장, 배너 등	
정기검사 실시 공고	가. 공 고 일: 2016. 4. 15일(정기검사 실시 약 1개월 전) 나. 게재장소: 구청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, 구 홈페이지 다. 공고내용: 일시, 구역, 장소, 대상, 소재장소 검사신청 미수검시 과태료, 문의처 등	
계량기조사원 및 검사보조원 모집	가. 기 간: 2016. 4. 18. ~ 5. 4. 나. 채용방법: 공개모집 다. 모집인원: 5명(기물조사원 4명, 검사업무보조원 1명) 라. 세부사항: 별도 계획 수립	
계량기조사원 교육	가. 일시: 2016. 5. 6.(금) 예정 나. 장소: 강북구청 지역경제과 사무실 다. 교육내용 ○ 정기검사 대량 계량기 숙지(3종) ○ 정기검사 통지서 작성요령 ○ 정기검사 대량계량기 조사 수검표 작성요령	
계량기 전수조사 및 수검통지서 배부	가. 기 간: 2016. 5. 9. ~ 5. 24.(기간 중 12일) 나. 조사인력: 계량기조사원 4명 다. 조사방법: 계량기 보유 소재지(각 동) 출장 방문조사 ○ 수검통지서 교부, 수검조사서 수령인 확인(서명·날인) ○ 정기검사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서 징구(희망자) ※ 계량기 종류, 수량(분동 및 추도 기물수에 포함)을 누락 없이 철저히 조사	

분야별	추진 내용	비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정기검사</p>	<p>가. 기 간: 2016. 5. 30. ~ 6. 21.(기간 중 16일) ※ 동별 검사일정표(붙임 1)</p> <p>나. 대 상: 전수조사 된 상거래용 계량기(1,232개 예상)</p> <p>다. 검사인력: 유통팀 담당직원 등 3명</p> <p>라. 검사장소: 각 동 주민센터 또는 시장 등 출장검사</p> <p>마. 정기검사 합격 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기검사 대상여부 확인(시행령 별표7) ○ 구조검사 및 오차검사 <p>※ 유의사항: 검사 시 분동, 추 등은 별개의 검사 대상이므로 저울이 불합격 되었다 하여 분동, 추 등도 불합격으로 간주하지 않고 별도로 검사하여 조치</p> <p>바. 사전준비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검사 실시 전 검사용 기준기 및 기구 점검 ○ 검사 전날 및 당일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소지자에 문자통보 <p>※ 분동 및 판수동 저울의 추도 검사 대상이므로 반드시 검사 당일 지참하여 검사 받도록 통보</p>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추가검사</p>	<p>가. 기 간: 2016. 6. 22. ~ 6. 24.(기간 중 3일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사일정에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집결 일괄 검사 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소재장소 검사</p>	<p>가. 기 간: 2016. 6. 27. ~ 6. 30.(기간 중 2일) ※ 신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</p> <p>나. 검사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토지나 건물 등에 부착되어 있는 저울 (음식물쓰레기종량저울, 대용량 저울) ○ 이동시 정확도가 우려되는 저울(Ⅱ등급 이상의 정밀저울) ○ 동일지역에 집중분포하는 저울(전통시장 저울 등) <p>※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(붙임3, 별시 제21호) 제출(백화점, 마트 등)</p>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합격계량기 조치</p>	<p>가. 2014년도 합격증인을 제거하고 ‘2016 정기검사 합격필증’ 부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기검사에 합격한 저울은 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 ○ 이전 정기검사 필증과 구분하기 쉽도록 다른색으로 제작 	

분야별	추진 내용	비고
불합격계량기 조치	<p>가. 불합격계량기는 ‘사용중지 표시증’을 부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표시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저울 -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 - 수리 후 재검정을 받지 않은 저울 - 비법정단위가 표시된 저울 ○ 불합격계량기 조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기검사를 받은 저울이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2개월 이내에 수리 후 재검정을 받아 사용하도록 계도 - 정기검사필증이 없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검정이나 교정을 받아 사용하도록 계도 - 비법정단위로 표시되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법정단위 표시명령(법 제6조제4항) 	
미수검사 조치	<p>가.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계량에 관한 법률」 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<p>나. 고의가 아닌 불찰로 인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경우는 정기검사 기간 외라도 정기검사에 준하는 검사 실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미 파악된 계량기 누락, 검사 제도를 모르는 경우 등 선의의 피해자를 위함 	

V 소요예산 - 6,466천원(구비)

(단위: 천원)

구분	예산액	산출내역	비고
합계	6,466		
인건비	4,83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사원: 57,040원×12일×4명 = 2,738 ○ 보조원: 61,600원×25일×1명 = 1,540 ○ 4대보험료 = 560 	
인쇄물 제작	1,04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수막, 배너: 8,200원×8㎡×5매 = 328 ○ 합격필증 등 인쇄물: 400원×1,800매 = 720 	
기준분동 교정수수료	580	○ 정기검사 기준분동 교정수수료 = 580	

- 예산과목: 지역경제과, 에너지수급안정, 계량기 검사,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, 인건비(기간제근로자등보수)/ 일반운영비(사무관리비)

VI 행정 사항

■ 계량기 정기검사에 따른 홍보협조

- 홍보담당관: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, 강북구소식지, SNS 등
- 정보화지원과: 구 홈페이지 팝업 게시

■ 행정지원과: 계근대 검사에 따른 차량(1톤) 지원

■ 동주민센터

- 계량기 정기검사 일정 공고문 게시(게시판)
- 통반장 회의 시 계량기 정기검사 홍보
- 검사당일 10:00까지 수검 장소 준비 협조
 - 천막, 책상, 의자 등(단, 우천 시 비를 피할 수 있는 장비 준비)

- 붙임 1. 계량기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(동별) 1부.
2. 계량기 정기검사 공고문(안) 1부.
3.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 1부.
4. 계량기 정기검사 안내문 1부.
5. 2016년 계량기 정기검사 조사 및 수검표 1부.
6. 계량기 정기검사 통지서 1부.
7. 계량기 사용중지 표시증 1부.
8. 정기검사 증인 표시 및 제거방법 1부. 끝.